

서울특별시의회
제320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3. 9.

서울특별시의회
우형찬 의원 (더불어민주당, 양천3)

□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교육위원회 우형찬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 개정 조례안」에 대하여
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은 기존 필수노동자의 업무 현황 및

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과

최우수준 등의 파악을 통한

단순한 실태조사에 국한하지 않고,

□ 업무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의 피해로 인해

추후 실태조사 이후, 올바른 이행 등의 추진을

평가하기 위한 평가 조항 마련으로서

노동자의 안전한 업무 보호를 위한

기반을 마련하고 보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- 이에 안 제7조의 제목을 기존 ‘실태조사’에서
‘실태조사 및 평가’로 수정하고
제3항을 신설하여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
대규모 재난 등이 종료된 경우
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마련할 수 있는
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